

의안번호	2207422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5.2.27.
추계번호	25A0243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¹⁾ 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 (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 (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 (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)	

1) 법 제6조(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

1.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
3.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조사 건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등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시장감시경량강화 사업 내역 사업으로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음
 - 안전성조사는 「제품안전기본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을 근거로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·생활용품 중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함
 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품, 부속품이 어린이제품에 해당(예: 장난감, 아동 의류, 학용품 등)
 - 산업통상자원부(국가기술표준원)는 시중 유통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(2022년 2,358건, 2023년 2,157건, 2024년 2,123건)로 제품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[표1] 2025년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(3732-303) 사업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 내역사업명)	2023년 결산	2024년 예산	2025년 예산안
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	7,211	7,211	4,364
- 시중유통제품안전성조사	3,466	3,466	4,024
- 불법·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	2,126	2,126	
- 안전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 등	500	500	
-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	340	340	340
-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	779	779	

자료: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(세부사업설명자료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, 조사결과 공표를 위한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한 추계는 불필요

-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확대되는 검사대상 어린이제품 수, 검사비 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나,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,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및 조건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함

○ 추가재정소요액 = $\sum_{t=2026}^{2030} [\text{확대된 검사대상 어린이제품 수}_t \times \text{검사비 단가}_t]$

-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포괄하는 개념²⁾으로 어린이제품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

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
-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,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외의 어린이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안전성조사의 대상 또한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조사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2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제품”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.

- 가.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
- 나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- 다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-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·포장
- 마. 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(遊技施設) 또는 유기기구(遊技機具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